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서상열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동욱,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호연, 송경택, 윤기섭,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정비지원계획을 수립·반영한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72조제4호 신설).
- 나. 정비지원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사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시공자 선정 시기의 예외)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지원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특별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p> <p><u>제77조의2(시공사 선정 시기의 예외)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지원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u></p>